

기본재산 취득·처분 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허가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 (대표자)	법인명	대표자 성명		
	소재지	전화번호		
취득·처분 재산의 표시	종류	규모	평가가액	소재지
취득·처분종류	☐ 취득 ☐ 매매 ☐ 증여 ☐ 교환 ☐ 임대 ☐ 담보 제공			
취득·처분사유 및 용도				
취득·처분방법				
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				

「재해구호법」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·처분하려고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전국재해구호협회장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.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.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(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합니다). 다만,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감정평가서를 갈음합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개별공시지가 확인서	